## 외부연구과제 연구원 내규

2015. 5. 1 제정2018. 6. 18 개정2019. 7. 29 개정

- 제 1조(목적) 이 내규는 덕성여자대학교(이하 '본교' 라 한다)가 수행하는 외부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6.18>
- 제 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연구원이라 함은 본교가 정한 소정의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외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.
- 제 3조(종류) 본교의 연구원은 박사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고,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8.6.18>
  - 1. 박사후연구원 : 국내·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지원기관의 별도 사업지침을 적용받는 자<신설 2018.6.18>
  - 2. 일반연구원의 종류는 종류 및 직급별 자격기준은 산학협력단정관시행세칙 별표 1과 같다.<신설 2018.6.18, 개정 2019.7.29>
- 제 4조(임용절차)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 단, 총장의 임명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,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8.6.18>
  - ① 소속 : 연구원의 소속은 연구소(센터)로 한다.
  - ② 임용구비서류 :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1. 임용 추천 협조문 1부
    - 2. 임용 추천 사유서 1부
    - 3. 이력서 1부
    - 4. 연구원 계약서 3부
    - 5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6. 학위증명서 1부
- 제 5조(임용기간) 삭제<2019.7.29>
- 제 6조(의무 및 권리)
  - ① 연구원은 소속 연구소에 상근하여 외부연구과제(사업)를 수행해야 한다.
  - ②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본교의 시간강사로 겸직할 수 있다.
  - ③ 연구원은 임용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에 출강 또는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.<개정 2018.6.18>
  - ④ 연구원은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<개정 2018.6.18>
  - ⑤ 연구원이 임용기간 중 발표한 연구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.<신설 2018.6.18>
- 제 7조(보수) 연구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8.6.18>

제8조(재원) 연구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 9조(면직) ① 총장은 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.
  - 1.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  - 2.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
  - 3.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  - 4. 연구책임자의 연구비로 연구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
  - 5.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  - ② 연구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면직되어야 하는 경우, 해당연구원 및 연구소장은 면직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 10조(증명) 연구원에게는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- 제 11조(기타) 연구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8.6.18>

## 부 칙<2015.5.1.>

1. (시행일) 이 제정 내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6.18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7.29.>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